

「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1월 0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0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5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11월 0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담당관)

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,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 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곤란함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「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하여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  
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 
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 
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의 “순세계잉여금” 용어는 전년도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년도가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며, 제3호 제2항 제2호에서의 “그 밖의 여유자금” 표현은 포괄적인 것으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
- 제4조 제3호 “토지매입비 등 균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”와 제4조 제4호 “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”는 본 조례안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 않고,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선심성 예산 집행이 우려됩니다.  
강원도 내 7개 시군의 입법례를 들어 판단에 참고하고자 합니다.

입법례	평창군조례안 제4조제3호 (토지매입비 등~)	평창군조례안 제4조제4호 (대규모 사업을~)
행정안전부 준칙안	x	x
양구군	○	x(긴급한 경우로 한정)
삼척시	x	x
양양군	○	x(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비로 한정)
영월군	○	x(긴급한 경우로 한정)
인제군	○	x
홍천군	x	x(긴급한 경우로 한정)
화천군	○	x

○ 기타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## 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○ 안 제3조제2항 중 “군수는 다음 각 호에”를

“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”로  
수정하고,

○ 제2항 각호를 삭제하며

○ 안 제4조제1항제4호 중 “대규모 사업”을 “긴급한 대규모 사업”으로 수정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설치)**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**제3조(기금의 조성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기금 전출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그 밖의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

② 군수는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평창군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3. 토지매입비 등 공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4. 긴급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5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6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

②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영)** ① 군수는 기금을 평창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기금의 운용심의)**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2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4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5. 그 밖의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 기능은 [「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](#)에 따른 평창

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계관계 공무원 지정)**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예산담당 부서장
2. 기금출납원: 예산담당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9조(관계규정의 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[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](#)을 준용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